

진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은 특별한 진술이 고문에 의하여 행하여 졌으며, 아마 그렇지 않으면 고문받은 사람은 똑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거나 혹은 그가 밝히고자 하지 않았던 어떤 정보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외가 실제보다 더욱 분명하다. 고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사법적 절차중에서 사실인 것처럼 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의 유용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제 16 조

1. 각 당사국은 제 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않는 여타 잔혹한,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교사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하여질 때에는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 및 제 13조에 포함된 의무는 고문에 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형벌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2. 본 협약의 규정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문서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유엔총회는, 1977년 결의 32 / 62중에서, 인권위원회에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협약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한 요청은 여러번의 후속 결의에서도 반복되었

다.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실무 작업반이 이 문제를 연구하였을 때, 먼저 고문의 개념은 합리적으로 간결한 용어로 정의될 수 있지만, 다른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간결한 정의를 초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로, 협약이 당사국들에게 이들 국가들의 형사상 및 절차상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많은 구속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 의무를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과 같은 모호한 개념에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다른 한편, 실무작업반은 협약이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모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어떤 의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무작업반 내에서도 협약의 의무가 그러한 처우나 형벌에도 적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

제 16조 1항에서 당사국들은 먼저 그 관할권하의 어떤 영토 내에서도 그러한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교사,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하여진 경우, 고문에는 이르지 않으나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제 2조 1항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와 기본적으로 상응하는 것이다. 제 1조 1항에서는 오로지 공공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행위만이 당사국들의 의무에 포함된다. “당사국 관할권하의 영토”라는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똑같은 고려사항이 제 5조와 관련하여도 적용된다.

한편 제 16조는 고문에 책임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제 1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의미에서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가한 행위에 책임있는 사람들의 범주 즉,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 언급하고 있지만, 원본은 이를 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본조는 제1조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의 범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협약의 역사에서 볼때 제16조에 언급된 행위의 피해자들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겼거나 혹은 그러한 처우나 형벌에 책임있는 사람의 실질적인 힘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의 이유는 제1조에 따라 고문의 피해자에 관해 논평에 설명된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제16조의 의미가 이런 면에서 제1조의 취지와 상응하고 있지 만 다른 면에서는 두 조항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제1조의 고문의 정의와 달리 본 조항에는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계되는 행위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정당한 것 같다.

제1항의 둘째 문장에서 특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있는 의무는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하여 서도 또한 적용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초안 준비과정에서 제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있는 의무가 그러한 처우나 형벌에도 또한 적용되어야만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한동안 다른 의견이 있었다. 결국, 이를 조항에는 어떠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2항에서는, 국제적인 문서 또는 국내법에 있는 광범위한 보호는 다른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하여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보호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 또는 추방에 관한 국제적인 문서나 국내법에 관련하여도 비슷한 설명이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 또는 추방된 사람이 고문에는 약간 못미치

지만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처하여 질 수 있는 나라로의 인도 또는 추방의 금지가 여타 국제적 또는 국내 법률문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한 협약 제3조가 오로지 고문에만 관계된다는 사실이 그러한 여타 문서로부터의 인도 또는 추방금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II. 제2부 : 시행규정

제17-24조로 구성된 제2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국제적 감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한 특별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유엔의 후원하에 체결된 다른 인권조약들의 예를 따르고 있다. 특히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협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1979년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협약)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인권이사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예를 각각 따르고 있다.

제2부에 규정된 시행체제의 많은 요소들은 이를 3개조약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한편, 이 체제는 다른 협약과 비교할 때 새로운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20조에서 취급된 조사에 관한 절차는 유엔의 다른 인권조약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고문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기본규칙은 제17조 및 제18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조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8-39조에 포함된 복잡한 규정보다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 및 제10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의 단순한 규정의 예를 따른 것이다. 동시에 협약의 작성자들은 논리 및 계속성의 관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이를 포함시켰다.

제 17 조

1.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설립되어 아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전문가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 소유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인권 이사회 위원이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 봉사키를 원하는 인사들의 지명 유용성을 유의한다.

3. 위원회의 위원선출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개최되는 격년주기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과반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4. 최초의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각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개월 이내에 후보를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을 지명국가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당사국에 제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본 조 3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여타 이유로 인하여 위원

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동인의 잔여 임기동안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전 당사국 과반수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명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동 지명내용을 각 당사국에 통보한 후 전 당사국의 과반수가 6개월이내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전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고문방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거, 위원의 임기 및 공식충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인권이사회(18명), 인종차별철폐위원회(18명)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초기단계 18명, 결과적으로 23명)의 위원수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다. 고문방지위원회가 다루는 주된 문제는 다른 위원회가 취급할 넓은 범위의 문제들보다는 특정되어 있으므로 총 10명의 위원수는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 경험 및 판단에 기초하여 위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들을 지명한 정부나 자신들의 국적국을 대신하여 행위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로서 표현된다. 그들이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인사들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8조의 인권이사회에 관한 규정과 형식이 동일하다. “법적 경험 소유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평한 지역적 배분”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형식이 동일하다.

폐협약 제 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31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7조의 유사규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 3개조약은 같은 맥락에서 “다른 형태의 문화” 및 “주요법 체계”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 2항의 첫번째 2개 문장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련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인권이사회위원 지명의 유용성에 관한 3번째 문장은 아래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요소이다. 협약작성 과정에서 해당초 스웨덴은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기존의 인권이사회에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안은 반대에 부딪쳤는데, 특히 유엔의 법률고문측에서 이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협약당사국 국민임과 동시에 가능하면 인권이사회의 위원이기도 한 인사들로 고문방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작업반의 토의과정에서 몇몇 대표들은 이러한 요건이 너무 엄격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덜 부담스러운 형식으로서 “인권이사회의 위원이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인사들의 지명 유용성에 유의한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다.

고문방지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의 활동간에 긴밀한 협조가 어쨌든 바람직하며, 특히 고문 및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치우나 형벌의 개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조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조는 협약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 심의 및 선택적인 불평제기 절차에 따른 국가 또는 개인의 통보심리에도 적용된다.

다음 3개항에서 규정된 선거체제는 필수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련항목과 유사한 것이다. 다만, 협약의 작성자는 이러한 체제를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구성코자 하였다.

제 3항은 위원선출을 위한 당사국회의에 관한 일반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3개조약은 이러한 규정 이전에 다른 규정, 특히 최초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우기, 다른 조약들은 위원선출을 위한 회의가 격년주기로 개최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위원회의 위원임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시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들 조약들과는 대조적으로 협약은 위원선출을 위한 회의가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 4항은 위원선출의 시기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규정에 일치하는 것이며,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련규정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다. 후자의 2개협약은 최초회의가 협약발효후 6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유엔사무총장은 각 선거일 최소 3개월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후보를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제 5항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4년이며, 매 2년마다 임원의 반수가 교체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교체계획이 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이런 방법으로 상당한 수준의 업무의 계속성이 보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원은 적어도 반수이상 임원의 경험으로부터 언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은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재지명된 경우 재선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항에 따르면,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4년이 아닌 2년 동안 근무할 위원의 명단은 동선출을 위한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같으며, 위원회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하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는 차이가 있다.

제 6항은 임기중 공석의 충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

약의 관련규정과 다르다. 현 협약의 작성자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33조 및 제34조에 포함된 정교한 체제가 고문방지위원회를 위하여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그렇다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 5(b)항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7조 7항에 포함된 규정을 단순히 복사하지도 않았다. 협약은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우연한 공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위원의 교체도 위원회의 승인에 따르지 않고 협약 당사국의 과반수 승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6항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한 요건이 부당한 지연을 가져오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제7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8조 6항과 일치한다. 이것은 별개의 위원회 경비가 위원을 지명한 국가에 의하여 부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반면에 전 협약당사국이 모든 위원회 위원의 총 경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용의 당사국간 분담 방법에 관하여는 미해결 상태에 남겨 두었다. 협약 초안과정에서 작업반 의 의장, 보고자가 제안한 더욱 상세한 형식을 기초로 이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의 제안은 몇몇 대표에 의하여 너무 세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작업반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결국 인종차별철폐협약 규정에 있다. 작업반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결국 인종차별철폐협약 규정에 상용하는 규정을 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부터 지침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개협약 모두 감독기관의 경비에 대한 당사국의 어떤 재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경비가 유엔에 의해 부담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발효후 당사국들은 제1차 회의에서 경비가 유엔의 분담율에 비례하여 당사국간에 분배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경우 단일국가의 부담율은 해당년도 경비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18 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절차 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a)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 (b)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상 위원회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최초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초회의 이후 위원회의 절차규칙에 규정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5. 전 당사국은 본 조 3항에 따라 직원 및 시설을 위한 경비 등 국제연합이 부담한 비용을 국제연합에 변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당사국 및 위원회회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위원회의 내부절차, 직원 및 시설, 그리고 선거 및 운영에 관련된 경비부담을 다루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의무에 관한 조항 이후에 위원회의 내부절차와 직원 및 시설을 다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 협약의 작성자는 그러한 규정을 당사국에 의한 보고체제와 같은 특정한 실시절차에 관한 조항 이전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1, 2, 3항 및 4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39조 1항 및 2항, 제36조 그리고 제37조 1항 및 2항의 예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제5항은 유엔의 다른 인권조약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조약과 관련하여 유엔자체 및 조약상의 기관에 의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을 유엔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경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당사국이 부담하며, 위원회 및 당사국회의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발생한 경비는 유엔이 부담한다. 협약에 따르면, 모든 경비는 당사국에 의하여 유엔측에 변상된다.

협약발효후 당사국들은 제1차 회의에서 경비가 유엔의 분담율에 비례하여 당사국간에 분배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경우 단일국가의 부담율은 해당국도 경비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19 조

1.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 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매 4년마다 제출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들을 전 당사국에 송부한다.

3.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며,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견들을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관련 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과 함께 본 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를 포함시킬 것을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관련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조 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 조항은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취하여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엔총회의 제3위원회가 협약의 최종문안을 확정하기 바로 직전까지 광범위한 토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이와 비교될 만한 보고서 제출절차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3개 소약은 당사국이 자국에 대하여 조약이 발효후 1년내에 첫번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그 이후에는 당사국이 매 2년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청할 때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정기적 보고체제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당사국이 자국에 대한 규약효력 발생 후 1년내에 그리고 인권이사회가 요청할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1981년 인권이사회는 규약 당사국이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제 19조 1항은 4년의 보고서 제출주기를 정하고 있지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와는 달리, 정규적인 추가보고서는 “새로이 취하여진 조치”에만 관련될 것이므로 포괄적인 첫번째 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들 조약들과의 또 다른 차이는 이들 조약들에서는 당사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지만, 현 협약에서는 당사국이 유엔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직접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후 1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당사국이 협약상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관련 당사국이 협약을 시행한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취한 조치만을 언급하는 것 같아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사실상 이러한 형식은 어떤 조치가 취하여 진 시기 및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실제로 협약상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제 1 항은 보고대상이 될 조치의 종류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제 1 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9 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8 조에 서와 같이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다른조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 40 조의 전례에 따라, 이 조항은 단지 “조치”에 관하여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사용된 형식보다 그 범위에 있어서 더 좁은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협약의 제 2 조 1 항이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 조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이 상기되어야 한다. 더욱기, 협약문안상의 당사국이 취한 조치라는 것이 관련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취한 조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른 보고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방당국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조치”라는 용어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하지만, 현 협약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시행에 있어 “전선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제 2 항은 사무총장이 모든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 3 항에 따라 보고서가 위원회에 의해 심의된다. 현 협약은 다른 조

약들과 같이 보고서의 심의를 위한 절차를 상술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인권이사회에서 확립된 관행, 즉 위원회가 공개된 회의에서 관련 당사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토의하는 관행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제 3 항은 위원회와 특정보고국가와의 서면대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유엔인권조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조항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 40 조에 따라, 인권이사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자체 보고서”(구체적으로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에 대한 자체 보고서) 및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일반적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인권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각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9 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21 조에 따라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보고 및 정보검토를 기초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당사국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각 위원회로 하여금 특정당사국에게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냐가 논쟁점이다. 현 협약에서는 제 19 조 3 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조항에서는 “보고서에 대한”(단수) 및 “관련 당사국에 대한”(단수) 그러한 의견제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예에 따라 “일반적”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 의견”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유엔총회가 이러한 용어대신 “의견 또는 제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견 또는 제안”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제 3 항의 문안은 그러한 일반적 의견이 특정당사

국의 특정보고서에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어구에 의한다면, 위원회가 다수의 보고서 검토를 토대로 모든 당사국에게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고 주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협약의 작성자들이 의도하였던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제 4 항은 협약의 시행체제에 있어 또 다른 새로운 요소를 대표한다. 이 규정의 독자는 제 24 조에 따라 작성된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는 공개적 보고서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별개 당사국에 제시한 일반적 의견을 발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량에 따라”라는 어구는 위원회가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그러한 의견발간을 결정한다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시한 견해도 발간할 의무를 진다. 한편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이 이 조항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할 연례보고서에 자국의 보고서 사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이를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시행되어온 관례와 같이 제 1 항에 따라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가 별도로 발간될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20 조

1. 위원회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

조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2. 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와 아울러 여타 입수 가능한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각 위원회에 보고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본 조 2 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그러한 조사는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국 영토에 대한 강문을 포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본 조 2 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 또는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동 조사결과 및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또는 제안을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5. 본 조 1 항~4 항에서 언급된 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비밀로 이루어지며 동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제 2 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관한 절차가 완결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를 거쳐 제 24 조에 따른 연례보고서에 동 절차의 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20 조는 협약의 시행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술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협약 준비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조항은 다른 인권조약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한 합의는 유엔총회의 제 3위원회에서 협약의 최종 문안을 결정하는 날에 비로서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협약당사국이 제 20 조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 28 조, 즉 새로운 조항의 삽입을 포함하고 있다.

제 20 조는 당사국의 영토에서 고문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한 경우, 위원회가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 20 조에 규

정된 절차는 단지 고문에만 적용되며,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협약에 이러한 조사절차를 포함시킨다는 생각은 어느정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결의 1503에서 규정된 절차로부터 발상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1970년 채택된 이 결의에 따라 어떤 정해진 조건하에서 비정부적 출치로부터 접수한 통보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형태의 극심한 그리고 믿을만하게 증명된 인권위반을 드러낼것 같이 보이는 특별한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권한을 유엔인권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이 결의 하에서 취하여 진 모든 조치는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비밀로 유지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감리대상이 되어 있는 국가가 절차의 비밀단계에서 명백하게 협력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였을 경우 “공개하는” 방법을 한차례 이상 사용하였다.

제네바 및 뉴욕에서의 토의과정에서 발전된 제 20 조의 문안은 위원회에 알려진 문제에 관해 관련 당사국이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의 중요한 측면은 이 문제가 초기에서부터 비밀로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요건은 최후 단계까지 유지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위원회가 조사 및 그 후속조치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발간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

제 1 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절차가 시작된다. 이 문안은 그러한 정보원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원이라도 제공된 정보가 믿을만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고려될 수 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위원회는 그 정보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다.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2 가지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절차의 첫번째 단계가 된다. 정보가 믿을만 하며 앞에서 언급한 취지의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위원회가 내리는 경우, 위원회는 그 문제를 자유로이 남겨둘 수 없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절차는 관련 당사국에게 정보의 검토에 협조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가 당사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원을 밝히는 것이 심각한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면, 물론 이를 밝혀야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제 2 항은 3 번째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한 후에는 비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정보를 고려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할 때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항은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견해를 언급함으로써 시작되는 바, 이 범주의 정보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제 1 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에 부응하게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위원회가 제 2 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3 항은 4 번째 절차, 즉 조사자체를 다루고 있다. 위원회는 이 맥락에서 다시 관련 당사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조사는 그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관련 당사국이 협조를 거절한다면, 이는 조사수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일 것이다. 한편, 그러한 거절은 근거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일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를 한 위원

또는 위원들은 제 2 항 후반부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4 항은 5 번째 절차를 다루고 있다. 5 번째 절차는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의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제안은 특히 조사에 의하여 조직적인 고문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요구될 것이다. 5 번째 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는 그 문제를 자유로이 남겨둘 수 없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의견 또는 제안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항은 우선 전항의 모든 절차가 비밀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5 항은 동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물론 이러한 절차가 관련 당사국이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의견 및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특히 관련되어 있다.

제 5 항의 2 번째 문장은 7 번째 절차를 다루고 있다. 이 절차는 위원회가 연례보고서에 제 2 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러한 보고서는 조직적 고문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존재하였으며 비밀조사가 행하여졌다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의견 및 제안과 관련 당사국의 이에 대한 반응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국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시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공개"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관련 당사국이 협조하고 고문의 관행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를 종식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압력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문제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당사국의 협력에 보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당사국과 협의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그 당사국이 이에 반대할 경

우, 반드시 이를 피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당사국이 찬성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요약보고서를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관련 당사국이 이러한 보고서의 발간에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제 21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동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본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 일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통보로써 동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접수 후 3 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서를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거나, 현재 취하고 있는 또는 취할 수 있는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 통보 접수후 6 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관련 당사국 쌍방에 만족스럽게 조정하지 아니할 경우, 일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리를 가진다.

(c)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당해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본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d)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e) "(c)"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f)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여타 문제에 관하여도 "(b)" 항에 언급된 관련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b)" 항에서 언급된 관련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b)" 항에 의한 통보 접수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i) "(e)" 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동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ii) "(e)" 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등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련당사국에 통보한다.

2. 본 조의 제 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

탁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 당사국에 의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본 조는 타 당사국들의 협약 의무 불이행에 관한 당사국들의 불평제기 절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동 절차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있는 유사한 당사국 불평제기 절차를 모방한 것이다. 이와 비교할 만한 당사국의 불평제기 절차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및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현장에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든 조약의 경우와 같이 본 협약은 "불평"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절차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불평제기 절차처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불평제기 절차와 같이 선택적이다. 선택적인 성격은 당사국들이 언제든지 본 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제 1 항 서두 및 그러한 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 2 항 세제 문구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선택적인 체제는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은 본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불평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만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본 조의 제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 41조로부터 차용되었다. 단순한 편집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제 21 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설정된 체계와 아래 사항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제 1 항의 속항(c)는 구제절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 뿐만 아니라 “본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1 항의 속항(e)는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우호적인 해결을 언급하고 있다. 협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42 조에 포함된 특별중재위원회의 설립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에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동 속항 둘째 문장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제 2 항은 제 21 조의 적용은 본 조에 다른 위원회의 권한을 최소한 5 개 당사국이 밖아들였을 경우로 하고 있다.

제 22 조

1. 본 협약당사국은 일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국관할권하의 개인들로부터의 또는 개인들을 대신한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익명이거나 그러한 통보 제출권리의 남용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통보도 본 조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 2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관해 제 1 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으며 동 협약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동 당사국은 통보 접수 6개월내에 그 사건의 내용 및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 그 구제조치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본 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를 심의한다.

5.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본 조에 의한 개인의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a) 같은 문제가 어떤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b) 개인이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취하였을 것,

다만,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동 협약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통보를 심사할 때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국 및 개인에게 제출한다.

8. 본 조의 제 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1 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을 때에 발효한다. 동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타 당사국들에게 송부한다. 동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동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인에 의한 또는 개인을 대신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본 조는 당사국에 의한 협약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의 또는 개인을 대신한 불평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동 절차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유사한 개인 불평제기절차를 모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만한 개인 불평제기절차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및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협정에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를 조약과 함께 본 협약은 “불평” 등의 용어는 사용치 않고 있다.

동 절차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개인 불평제기절차처럼 선택적이다. 그 선택적 성격은 당사국이 언제든지 본 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인정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제1항의 서두 및 그러한 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제8항 세째 문구에 나타난다.

본 조의 제 규정은 협약에 관련된 개인의 불평제기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단순히 편집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제22조는 의정서에 설정된 체계와 아래 사항에 한하여 차이가 있다.

의정서의 제1항은 협약규정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 “으로부터의” 통보만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본 조 1항은 위원회가 협약규정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 “으로부터의 또는 그를 대신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 항은 누가 개인을 대신하여 통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 불평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가까운 친척이 그를 대신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비정부기구가 직접 피해를 받은 개인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정서 제5조는 “서면 정보”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면으로는 불가능한 정보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협약의 방식은, 예를 들어 위원회가 중인 또는 불평을 심리하는 전문가로부터 청문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5항(a)에 따르면 위원회는 만일 같은 문제가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거나 이미 그러한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다면 불평을 심리할 수 없다. 후단의 제한은 같은 문제가 그러한 절차

에 따라 “심사되고 있는”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는 의정서 제5조 2항(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무엇보다도 위원회가 인권이 사회 또는 인권에 관한 유럽 위원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리된 문제에 대한 불평은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다른 국제기구에의 불평제기가 단순히 형식적인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본 협약에 따라 새로이 심리하는 데는 장애가 없을 것이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503에 따른 조사는, 그 결의에 의한 조사가 개인적 권리 위반 등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관한 것인 한 고문방지위원회가 심리하고 있는 개인의 불평 심리를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야만 한다.

제5항(b)는 구제절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 뿐만 아니라 “본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8항은 제22조의 적용은 본 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최소한 5개 당사국이 받아 들였을 경우로 하고 있다.

제 23 조

위원회의 위원과 제21조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본 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3조와 일치한다.

제 24 조

위원회는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본 협약에 따른 연례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이들 문서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들이 국제연한총회에 그 활동을 연례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송부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협약의 작성자들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이를 선출한 당사국들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다른 감독기구들의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는 공개적인 보고서이어야 한다. 이들은 특히 제19조 4항 및 제20조 5항의 규정들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이다.

Ⅲ. 제 3 부 : 최종규정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26 조

본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독자는 “서명”, “비준” 및 “가입”의 용어 설명은 제Ⅱ부를 참조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후원에 따라 이루어진 유사한 조약들의 관행과 같이 본 협약은 발효 후에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으며 당사국들은 발효 전에도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협약의 발효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국들은 이를 서명하고 추후 비준에 의하여 구속적인 의무를 부담하든지 가입에 의하여 즉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제 28 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20조에 따라 부여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본 조는 총회에서의 협약초안 심의과정 중 백러시아에 의해 제안된 선택적 조항, 즉 제 20조와 관련하여 합의를 가능케 한 조항이다. 본 조는 제 21조 및 제 22조에 따른 절차와 같이 제 20조의 절차를 완전히 선택적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당사국들은 그러한 조항들의 적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제 21조 또는 제 22조에 구속받지 않는 한편,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명백히 하지 않는 한 당사국들은 제 20조에 자동적으로 구속된다. 둘째로, 제 28조에 따른 제 20조의 적용 배제선언은 비준 또는 가입 후에는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유보를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협약에 구속되면 당사국들은 제 20조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할 수는 없다. 동일한 내용이 그러한 유보를 선언하였으나 제 28조 2항에 따라 추후 철회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다른 한편, 제 21조 및 제 22조의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때는 항상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다.

제 29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 찬성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본 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접수 후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그 승인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

부된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본 협약당사국의 3분의 2가 각 당사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음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을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본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의하여 구속된다.

본 조의 제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51조에 기초하여 약간의 편집상의 변화를 가미한 것이다. 동 규약과 비교하여 편집상의 차이라고만 할 수 없는 두가지 차이점이 있다. 제 1항의 “그러한 통보 후 4개월 이내에”라는 문구 삽입과, 제 2항에서의 국제연합총회에 의한 승인 요건의 삭제이다.

제 30 조

1.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그들 중 1개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당사국이 중재재판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본 조 1항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본 조 1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3. 본 조 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

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규정은 약간의 편집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 29 조와 일치한다.

제 31 조

1. 일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지 1년 후에 유효하게 된다.

2. 동 폐기는 그것이 유효하기 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동 폐기가 유효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는 여하한 문제가 계속적인 심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위원회는 일 당사국의 폐기가 유효하게 된 날이후에는 그 국가에 대한 여하한 새로운 문제의 심사도 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달리 본 협약은 폐기 조항에 관한 분명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제 1 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21 조와 일치한다. 제 2 항은 폐기의 효과를 제한하는 두가지 추가적인 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두번째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제 12 조 2 항에 선례가 있으나, 만일 위원회가 특정한 문제의 심리를 이미 시작하였다며 그러한 심리는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3 항과 함께 살펴볼 때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방식에 있어서는 더욱 명확하다.

제 32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회원국과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 25 조 및 제 26 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 27 조에 의한 본 협약의 발효일자 및 제 29 조에 의한 개정안이 발효일자
- (c) 제 31 조에 의한 폐기

비록 본 조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기탁자인 조약들의 표준적인 종결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유사한 조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제 33 조

1.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동본을 모든 국가들에게 송부 한다.

본 조는 국제연합의 후원에 따라 이루어진 조약들의 관례적인 종결 조항이다.

3. 미국의 고문방지협약
상원 비준동의 요청서

미국의 고문방지협약 상원 비준동의 요청서

-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의 요약분석*

신 부남 ** 옮김

일반적 배경

본 협약의 모체는 전쟁법이다. 1907년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해이 그협약은 포로들이 인도적으로 대접 받아야 하며, 점령지역의 주민은 일 반적으로 “타 교전국의 군대나 방어수단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적군에 대한 충성서약”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부록,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규칙 제 4조, 44조 및 45조)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당사국인 1949년 제 3, 4차 제네바 협약은 포로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고문이나 잔혹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혹은 억류된 사람들을 몰살하고자 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억류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나 혹은 제 3자로부터 특별히 정보를 얻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강압” 수단을 금지하고 있

* 1988.4 동 협약에 서명한 미 행정부가 상원에 제출한 비준 동의 요청서에 포함된 내용: Summary and Analysis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외무부 국제연합과 사무관

으며 이에는 “살인, 고문, 신체적 형벌이나 폐손 그리고 억류된 사람의 치료와 관계없는 과학적, 의학적 실험” 뿐만 아니라 “잔혹한 행위” 도 포함된다. (3차협약 제87조 및 4차협약 제31, 32조)

보다 일반적인 인권기구의 발전과 함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의 금지는 전시는 물론 평화시에 있어서도 모든 인류의 보호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확립되었다.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 최초의 주요기록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제5조에서 :

“어느 누구도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조항이 상술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만들어졌다. 1966년부터 서명된 이 조약은 현재 약 80여개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서명 완료했으나 비준하지 않고 있음). 동 규약은 제7조에서 :

“어느 누구도 고문 혹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조는 공공의 비상사태시에 있어서도 이 조항을 위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에 대한 금지는 또한 지역적 인권협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미주인권규약 제5조 2항 (OAS Treaty series No 36) (미국은 이 규약은 서명완료했으나, 비준하지 않고 있음);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3조 (213 U.N.T.S. 221); 인도적, 인간적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 제5조 (ASIL Int'l Legal Mat., Jan. 1981. p. 58).

그 이후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한 보다 상술된 비구속적 지침으로서 발표된 문서는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무투표 채택된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

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인류의 보호에 관한 선언” A/Res/3452 (XXX) 이다.

고문을 정의한 12개 조항을 포함, 이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권고조치를 설명하고 있는 이 선언은 고문방지협약 초안의 출발점이었다.

동 협약은 먼저 채택된 테러행위에 관한 4개의 다자협약을 모방한 것 이었으며, 미국은 이를 각각의 당사국이다 : 1970년 항공기의 불법적 점유금지를 위한 헤이그협약(공중낙치) (TIAS 7192; 22 UST 1641);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금지를 위한 몬트리올협약(파괴) (TIAS 7570; 24 UST 564); 외교사절을 포함,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인사들에 대한 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위한 1973년 유엔협약(외교관의 보호) (TIAS 8532; 28 UST 1975); 1979년 인질 억류에 관한 국제협약(인질) (U.N.G.A.Res. 34/43, December 17, 1979; Senate Ex. N, 96 th Cong, 2d Sess (1980)).

이들 각 협약들은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형사처벌에 있어 소위 “범세계적 재판관할권” — 자국내에서 발견된 범죄인의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확립해야 할 각국의 의무 —과 범죄인의 인도 혹은 이를 사건을 기소할 의무에 근거하여 국제적 협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협약내용의 비 자동집행력에 관한 선언

비록 협약의 용어가 제안된 유보조항이나 이해조항과 함께 미국법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국내의 입법, 사법적 절차에 적합한 별도 집행조치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래의 선언은 협약의 조항 그 자체가 국내법으로서 저절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추천될 만하다.

“미국은 협약의 제1-16 조항들은 자동집행 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연방과 주 간의 유보

경찰이나 기타 정부당국이 연방, 주 및 지방수준에 까지 분권화된 상황에서는 아래의 연방과 주간 유보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그 내부문제에 관하여 입법적,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위”까지만 본 협약을 이행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헌법상 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헌법상 기관중 적절한 소관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조항은 주로 협약 제 10-14 조의 의무조항과 법집행절차, 고문 전술조사, 고소 및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다루는 법집행인들의 훈련에 관한 협약 제 16 조항과 관계가 있다. 주나 지방관리들도 협약의 고문금지 조항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제 1 조

제 1 조는 협약의 목적상 고문을 정의하고 있다. 협약은 고문을 비교적 제한된 방식 즉 전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극단적 행동이라는 고문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문”은 고문과 같이 유감스러운 일이며 예방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고문의 경우와 같이 협약이 정하여 심각한 법적조치를 요구하는 만큼, 전세계적으로 그 리고 절대적으로 비난받을 정도는 아닌 더 약한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협약은 고문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행위를 분류하고자 하지 않고 있으며, 고문과 더 약한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과의 명확한 선을 긋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협약은 주어진 행동이 고문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위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고문이라 할 수 있는 행동은 잔혹하고 비인도적 처우의 극단적 행동이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의도적 행동이어야 한다.

고문이 잔혹하고 비인도적 처우의 극단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협약 제 16 조의 “고문에 이르지 않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여타 행동”에 관한 언급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 표현의 밑줄친 부분은 고문이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극단적 형태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음이 협상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제 1 조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고문의 궁극적 성격은 고문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조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제 1 조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는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고문의 결과라 할 만큼 심각한 것임을 판별할 때는 고통과 피해를 준 행위의 잔혹성과 비인도적 정도가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타인에게도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더우기, 의도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자 하였다는 조건은 예기치 않게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주장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특정한 의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본 협약의 목적상, 의도하지 않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극심한 고통과 피해는 고문이 아니다. 의도적일 것이라는 조건은 제 1 조에서 고문의 동기를 자백, 위협, 강압, 혹은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여하한 이유로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을 예시함으로써 강조되었다. 위에 예시된 목적이 모든 것을 망라한것 (exhaustive) 이 아니라는 것은 “—와 같은 목적으로”라는 문구에 나타나 있다. 오히려 그것은 고문의 기초가 되

는 전형적인 동기의 유형을 예시한 것이며 교묘한 의도와 악의가 조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상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야비한 경찰행위”라는 범주에 속하는 심한 처사는 유감스러운 것이긴 하나 고문에 속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국제관습상 “고문”이라는 용어는 교묘하고 극단적인 그리고 유별나게 잔혹한 행위, 즉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타,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전류시용, 그리고 한 군데에 묶어 두거나 매달아서 주는 극심한 고통을 말한다(참조 유럽인권재판소, Judg. Court, January 18, 1978, Case of Ireland v. United Kingdom Series A, No. 25, 2 E.H.R.R. 25, 80; 유럽인권위원회, Op. Com., 5 November 1969, Greek case, 11 절, YB XII p.501).

협약은 고문의 범위를 “공무원 또는 공직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강요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목인에 의한” 것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본 협약은 순전히 사적인 행동으로 야기되는 고문을 제외한 정부 당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문에만 적용되며 미국법에서 익숙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법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고문에만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공무원이 사적 고문을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입할 법적 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사적 고문행위를 “목인”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협약은 고문의 정의에서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야기되거나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는 배제한다.

“제재조치”란 용어는 “처벌”과 동의어가 아니다. “처벌”이란 단어는 보다 좁은 의미로 법, 규칙, 또는 예규를 범한 댓가로 받게되는 벌을 의미하지만 “제재조치”란 순순히 승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제재조치”란 용어는 사실적으로 부과된 형벌보다 법집행을 위하여 취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협약으로 부과된 형벌보다 법집행을 위하여 취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약은 제재조치의 “적법성”여부가 국내법 혹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협상과정에서 양쪽 지지의견이 비등했다. 그러나 비록 미국법에 인정된 법집행을 위한 조치가 고통과 피해를 주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없이 행하여 졌다면(그래서 제1조에서 말하는 고문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집행 조치가 고문을 구성한다는 불합리한 주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의 적법여부는 미국법이나 혹은 그 법의 사법적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에 설명된 대로 제1조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 이해사항을 추천한다. 이들은 미국의 합법적인 법집행 조치에 대한 협약의 불합리한 적용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법집행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어떤 행동이 고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기 위하여 교묘히 계산된 극히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행동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은 제1조의 고문에 대한 정의는 범죄자의 구금이나 육체적 통제상태에서 사람에게 행해진 직접적인 행동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은 제재조치가 사법적으로 부여된 조치만이 아니라 미국법이나 그 법의 사법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법집행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은 ‘목인’이라는 용어가 어떤 행동이 고문을 구성하기에 앞서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어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은 적법절차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고문을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 2 조

제 2 조는 일반적으로 각 당사국은 그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라는 용어는 그 나라에 등록된 선박, 항공기등 당사국이 정부 당국으로서 통제하는 모든 장소들을 말한다.

이에 부가하여, 제 2 조는 전쟁 혹은 공공의 비상사태등 어떠한 예외적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전쟁상태에서의 고문은 미국과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당사국인 제네바협약에서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여하튼간에 일반적으로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비상사태는 비상대권 발동의 원인으로서, 혹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주 원용되며, 때문에, 만일 협약이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려면, 고문에 대한 변명으로서 공공의 비상사태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조는 또한 “상부지시”는 고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미국은 뉴른베르그 재판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협약이 처벌을 완화하는 요소로 상부 지시가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이 궁극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기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문제는 각 당사국들의 판단에 맡겨졌으며, 따라서 미국은 고문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할 때 상부지시를 정상 참작할 수 있다.

현행 미국의 군사법에 의하면, 상부지시에 대한 복종은, 만일 피고인이 그 지시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보통의 상식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도 불법임을 알 수 없었다면 통일 군사재판법하에서 면책된다. 군법회의 규칙 916(d), 군법회의 규범(Rev. 1984)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

국은 고문을 교묘히 계산된, 극히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특히 의도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해한다. 보통의 상식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이 범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약 제 2 조에 의하여 미 군법이 변동될 필요는 없다.

비록 어떠한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지 않으나, 자기나 타인의 방위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은 만일 이를 행동이 고통과 피해를 주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가 없는 한 제 1 조가 정하는 고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 2 조가 이러한 관습법적 보호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래 이해사항을 추천한다.

“미국은 제 2 조 2 항이 자신의 방위 및 타인의 방위를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만은 않은 적절한 판례법상 방위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 3 조

제 3 조는 어느 당사국도 개인을 그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현재 미국법 하에서 개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소신을 이유로 그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지역에 추방 또는 소환되지 않는다. (참조 8 U.S.C. 1253 절(h)) (1). 미 연방재판소는 이 조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추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 한다. 제 3 조가 이러한 증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 아래 이해사항을 추천한다.

“미국은 협약 제 3 조에 언급된 ‘그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는 구절을 ‘그가 고문을 받을 가능

성이 있다면 '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 3 조에 따라 현행 미국법에 따른 추방금지는 열거된 허용불가 이유 중 하나에 따라 박해를 포함하지 않는 고문의 경우까지 연장되게 될 것이다. 이 금지조항은 미국내에 있는 사람의 특정 국가에 대한 추방 또는 송환에 적용되며, 다른 나라로의 입국 권한 혹은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3 조는 또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들 간에 인도를 부정하는 조약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당사국이 아닌 나라와의 양자간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주어진 경우, 위에 언급된 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제 3 조의 초안에서도 인정되었다. 따라서 어떤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서명전에 체결된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비협약 당사국에 대한 의무와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제 3 조에 자신들이 구속 받지 않음을 선언하는 유보를 하게될 것임이 인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어느 개인이 그가 인도될 나라에서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근거를 두지 않는다. 우리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모두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하에 어떤 특정한 국가에 인도해야 할 미국의 의무와 고문방지협약 제 3 조에 따라 어느 개인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는 인도하지 않을 우리의 의무와는 충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유보를 추천한다.

"미국은 제 3 조가 미국과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으나,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미국의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 제 3 조에 의해 기속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유보조항은 조약의무의 충돌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에 미국이 항상 망명자를

인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무장관은 국내법에 따른 재량과 범죄인 인도를 부정하는 기준 조약의 기반에 따라 인도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보조항으로 미국은 잠재적으로 상충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소제기를 피할 수 있다. 대신에 집행부서는 상대적으로 빨리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자유로이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 3 조는 어느 개인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 소관기관은 적절하다면 관련 국가내에 심한, 극악한 또는 대량의 인권위반들의 고질적 존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절하다면"이라는 말은 매 경우보다 그 나라에서 "인권위반 사례"의 존재여부 및 그 정도가 특정한 경우에 관련된 요소인지를 소관당국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언론 자유의 심한, 극악한 부정은 일반적으로 고문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제 3 조에서 "소관기관"이라 함은 미국에서는 범죄인 인도, 추방 혹은 송환을 결정할 권한있는 행정당국을 의미한다. 소관기관을 상술하기 위하여 아래 선언을 추천한다.

"미국은 협약 제 3 조에 사용된 '소관기관'이라는 구절을 범죄인 인도의 경우 국무장관을, 추방사건의 경우 법무장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언한다." 협약은 자동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결정이 국내법 정에서 사법적으로 재검토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 4 조

제 4 조는 각 당사국이 모든 고문행위와 함께 고문의 미수, 공모, 혹은

가담하는 등의 모든 관련행위는 범죄가 되며 그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로 처벌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후술되는 제 5-7 조항과 함께 본 조항은 항공기납치, 파괴, 외교관의 보호, 인질에 관한 협약들의 조항을 본뜬 것이다.

다음 조항 제 5 조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현행 법하에서 미국의 관할권은 해외에서 행해진 고문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 고문행위 및 고문의 미수 또는 공모는 현행 주 혹은 연방법하에서 범법 행위가 된다. 이러한 행위들이 주 관할권내에 속할 때 그 범죄는 아마도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일반 범죄로 취급된다. 특정한 경우에 연루된 사람, 혹은 그 행위의 성질이 주간(州間) 유괴 또는 인질억류 사건일 때는 연방범죄에 해당한다.

(참조 18 U.S.C. 112 절, 114 절, 115 절, 878 절, 1201 절 및 1203 절.)

그 행위들이 연방 재판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유사한 일반 범죄 예를 들어 폭행, 신체훼손, 살인, 고살(故殺), 살인 혹은 고살미수, 강간 등은 연방 형사법에 정의되어 있다. (참조 18 U.S. 113 절, 114 절, 1111 절, 1112 절, 1113 절과 2031 절.)

상기의 범죄를 실행하려는 음모와 그 사실을 방조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된다. (참조 18 U.S.C. 3 절, 371 절과 1117 절.)

더우기 특정 주의 해상 및 육상 관할권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경우 연방법이 주법에 명시된 범죄와 혼합 적용된다. (참조 18 U.S.C. 13 절.)

이러한 일반 범죄들에 부가하여 연방법은 두 가지 특히 관련 있는 “현법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18 U.S.C. 241 절에 따르면, 미국의 현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와 특권을 남용 또는 향유함으로써 시민을 해, 억압, 위협, 공갈하는 음모는 벌금 1만불, 10년까지의 징역 혹은 양쪽을 다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이다.

18 U.S.C. 242 절에서는, 미국 시민으로부터 이러한 권리, 특권 혹은

면제를 법이라는 미명하에 박탈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1천불까지의 벌금, 1년까지의 징역 혹은 양쪽에 의해 다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 두가지 법규에서 범법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민적 권리에 관한 다른 법규도 적용될 수 있다. (참조 18 U.S.C. 245 절 혹은 594 절.)

한편 18 U.S.C. 3571 절에 따르면 1987년 12월 11일 이후 발생한 범죄중 중대한 범죄 혹은 인간의 생명손실까지 초래한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 25만불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만일 A급에 해당하는 다른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사람에게는 10만불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으로부터의 보호는 미국 헌법의 제 5 차, 8 차 및 14 차 수정에 규정되어 있다. 3개 수정중 잔혹한, 비상례적 형벌을 금지한 제 8 차 수정은 그 범위에 있어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서 “유죄 선고받은 사람들”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참조 *Ingraham v. Wright*, 430 U.S. 641, 664 (1977). 그러나 제 8 차 수정에서는 인간의 고문, 학대 및 유사한 형태의 형벌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제 5 차 및 14 차 수정이 고문방지를 규정한다. 이러한 보호는 대체로 개인적 안전을 위한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인 적법 절차로 보장된다. (참조 *Youngberg v. Romeo*, 457 U.S. 307, 315-6 (1982).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 등의 금지에 의해서도 자백을 강요하는데 이용되는 고문은 특별히 금지되어 있다. (참조 *Williams v. United States*, 341 U.S. 97 (1951). *Duncan v. Nelson*, 466 F. 2d 939 (7th Cir. 1972), cert. den., 407 U.S. 894 (1972). 특별한 경우, 고문은 다른 헌법적 권리 예를 들어 제 4 차 수정의 부당한 수색과 압수금지와 제 6 차 수정의 재판에 관련한 권리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상기 관점에서, 미국과 미국의 관할권내에서의 고문행위는 연방 및 많은 주의 형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은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미국의 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고문을 제외하고는 협약 제4조를 이행하는데 충분하다.

제 5 조

제5조는 각 당사국이 제4조에서 언급된 고문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을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1) 범죄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제5조 1항(a))
 - (2) 범죄 혐의자가 자국민인 경우(제5조 1항(b))
 - (3) 범죄 혐의자가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영토내에서 발견되었으며, 제8조에 규정된 대로 인도되지 않은 경우(제5조 2항)
- 추가적으로, 당사국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 자기 국민중의 하나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5조 1항(c)).

제5조 및 협약을 전체적으로 초안하는 과정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협약이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어떤 국가도 이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범세계적 관할권”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항공기납치, 파괴, 국제인질억류 및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인사에 대한 공격과 같이 고문은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의 대상인 범죄이며, 적절한 관할권에 관한 결정과 함께 인간에 대한 죄악으로서 범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미국은 범세계적 관할권을 위한 조항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범세계적 관할권”이라는 조항은 공적인 고문이 실제로 일어난 나라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라는 관점에서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어느 외국정부가 제5-7조항에 포함된 범세계적 관할권 조항을 이용하여 미국 시민에 대하여 부당한 기소를 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그러한 비합법적 행위를 강력히 거절할 것이다.

상기에 언급된 대로,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또는 미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행 주 및 연방 법률로서 충분히 관할권을 설정할 수 있다. (참조 18 U.S.C. 7절; 49 U.S.C. 부록 1301 (38), 1472 절.)

따라서 보충해야 하는 법률은 미국외에서 미국인에 의하여 일어난 범죄에 대한 제5조 1항(b)의 관할권을 설정하는 것과 해외에서 고문을 저지르고 추후 미국 관할권 내의 영토에서 발견된 외국범죄인에 대한 제5조 2항의 관할권을 설정하는 것 뿐이다. 추천된 법률안이 법무성으로부터 의회로 송부될 것이다. 항공기납치, 파괴, 인질 및 외교관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상응하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유사한 법률은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참조 18 U.S.C. 32절, 112절(e), 878절(d), 116절(c), 1201절(e), 및 1203절; 49 U.S.C. 부록 1301절(38)(d) 및 1472절(n)).

따라서 아래 선언을 추천한다.

“미국은 협약을 실행하는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을 것이다”

제 6 조

제6조는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범죄혐의자가 발견되었을 때 취하여야 할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먼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후 상황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납득되면, 그 국가는 범죄혐의자를 구금하거나

나 형사 또는 인도절차가 취하여 질 때까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중인 자가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닐 때, 자기 국적국의 대표와 연락을 취함에 있어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이 구금되었을 때의 국제 관습적인 절차를 반영하고 있다(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36조 1항 (d), TIAS 6820, 21 UST 77.)

개인을 구금한 국가는 또한 제 5조에 따라 범죄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동인의 구금을 성당화하는 상황과 동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 국가는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동·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관련있는 다른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공기납치, 파괴, 외교관의 보호 및 인질에 대한 협약의 상용하는 조문을 일부 초안 작성시의 명시적 사항을 추가하면서 모방한 것이다. 1항에서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후”라는 문구는 소위 “예비” 조사가 뒤이어 있을 것이지만, 어느 개인의 구금 여부 결정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에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첨가되었다. “법적인”이란 단어는 “조치”라는 단어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금 또는 다른 조치” (“구금 또는 다른 법적 조치”)라는 문구에 첨가되었다.

이 조항의 실행은 범죄혐의를 조사하는 현행 법률과 절차에 따르며 이를 위하여 또 다른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다.

제 7 조

제 7조는 어느 당사국이 그 관할권내에서 발견된 범죄혐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동 당사국은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소관기관에 회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용하는 조항이 항공기납치, 파괴, 외교관의 보호 및 인질에 관한 협약들에서도 발견된다.

협약에 소위 “인도 혹은 기소하는”이라는 엄격한 규칙을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좀 약한 언급을 – 어느 당사국은 인도를 요청받았으나 거절한 경우에만 기소를 위하여 사건을 회부하면 족하다고 주장–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 기타의 국가들은 약한 조항이 협약에 헛점을 만들게 되고 고문자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결국 긴 검토끝에, 강력한 조항이 1984년 채택되었다.

고문이 추정되고 어느 당사국이 고문 혐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제 7조는 기소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에 “기소를 목적으로” 소관 기관에 이 사건을 회부할 것을 요하고 있다. 기소여부의 결정은 충분한 법적, 사실적 근거가 그러한 행위에 존재하였는지의 판단에 따른다. (WG 82, 27 절.)

따라서, 제 7조 2항은 “이 기관은 자국법하에서 중대한 성격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결정을(기소에 관련한)내린다”고 정한다. 2항은 각 당사국의 법이 “기소 또는 선고에 필요한 증거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인정하며,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일 때 혹은 범죄혐의자가 그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관할권이 범죄자의 실재를 근거로 주장되는 때에는 보다 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 5조가 고문행위에 관한 범세계적 관할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외국에서 외국인들간에 벌어진 고문관련 사건들을 청문하고 재판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니다. 그 보다는 고문사건이 발생한 해당 당사국이 기소에 있어 미국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 선언을 추천한다 :

“미국은 미국외에서 외국인에 의하여 일어난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은 그 범죄가 발생한 나라에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만 협약 제7조 1항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소관기관에 회부할 것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교관들이 누리는 면제와 같이 범죄의 기소를 면제받는 경우, 형사상 기소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명백히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7조 2항은 소관기관이 “중대한 성격의 일반 범죄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면제는 본 협약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음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면제에 관한 문제는 각 당사국들이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제14조에서 또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제7조 3항은 모든 범죄혐의자들이 “소송절차중에 있는 경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인 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8 조

제8조는 범죄 혐의자의 인도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항공기납치, 파괴, 외교관의 보호, 인질에 관한 협약들에 있는 상응하는 조항들을 모방한 이 조항은 애초에 미국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제1항은 제4조에 언급된 범죄들이 당사국들간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과 미래에 체결될 인도조약에도 포함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주어진 경우에는 고문방지협약이 아닌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조건들이 미 국이 범죄인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2항과 제3항은 요청하는 국가와 요청받는 국가 사이에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는 경우의 인도요청에 관한 것이다. 만일 요청받은 국가의 법에서 인도를 위하여 조약이 필요하다면 그 국가는 “그 선택에 따라” 본 협약을 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약으로서 원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인도받은 국가의 법이 인도에 필요한 별도의 조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그 법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마땅히 인도하여야 한다.

미국법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인도를 위하여는 별도의 조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 연방재판소의 관련 판결도 제8조 단독으로는 인도를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 9 조

이 조항 역시 항공기납치, 파괴, 외교관의 보호, 인질에 관한 조약들을 모방한 것인바, 당사국들은 협약상 형사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재량하에 있는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형사 절차와 관련된 최대한의 지원을 상호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 1항에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것”을 정하고자 한 미국의 제안은 기각되었으나, 제공 가능한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는데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대개 인식된 것 같다.

제9조 2항은 항공기납치, 파괴, 외교관의 보호, 인질에 관한 협약들의 상응한 조항들과 다르다. 이러한 협약들과 고문방지협약의 초안은 1항에 포함된 의무가 다른 조약들에 포함된 상호 사법공조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의 마지막 원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수정되어 사법공조에 관한 다른 조약들에 “의거하여” 제1항의 의무가 수행될 것임을 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2항이 1항에 의해 설정된 의무를 약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

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 당사국간에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없는 경우 제9조 2항은 무관하며 협약 제9조 1항에 규정된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제 10 조 및 11 조

제 10조는 당사국들이 체포, 억류 또는 수감된 개인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될 수 있는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1조는 각 당사국이 고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금 및 그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심문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된 연방과 주 간의 유보조항을 지키면서, 미국은 그 권한과 통제하에 행해지는 법집행력에 관한 이들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 주들 혹은 시들의 권한 또는 통제하에 행해지는 법집행력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제 10조 및 11조의 수행을 위하여 그 주의 소관당국이 적의 조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 12 조 및 13 조

제 12조는 당사국의 소관기관들이 “그 관할권내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조사는 공식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경우 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소관기관의 주도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제 13조는 모든 개인은 고문을 고소하는 권한과 그의 사건이 소관기관에 의하여 신속히 그리고 공평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그 국가는 고소자와 증인들이 고소 또는 증거 제시의 결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처우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 14조는 고문의 피해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문의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양 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제 14조는 각 당사국이 국외에서 발생한 고문은 제외한, 단지 그 국내에서 발생한 고문행위의 피해에 대하여만 독자적인 행동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사실 제 14조는 “자국 관할권내의 영토에서 발생한 고문행위의 피해자”라는 표현으로 채택되었다. 밑줄 부분의 어구는 실수로 삭제된 것 같다. 이러한 해석은 범세계적인 소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범세계적 재판권 할권을 창설하는것 만큼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토의도 없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해석은 확립된 것이다. 따라서 아래 이해사항을 추천한다 :

“미국은 제 14조가 당사국들로 하여금 당사국 관할권내의 영토내에서 일어난 고문행위에 한하여만, 피해구제를 위하여 독자적 행동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 14조가 피해보상 계획을 요하는지 혹은 피해자가 고문혐의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느 접근방법이나 제 14조 본문에서 요구된 바처럼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다.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이 확인되었다. 즉, 미국을 포함 몇몇 나라들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계획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논의되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해석이 제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행 미국법은 이미 제 14 조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소송제기권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판례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 42 U.S.C. 1981-1992 절 하의 시민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혹은 협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참조사례 *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403 U.S. 388(1971), 및 *Carlson v. Green*, 446 U.S. 14(1980)).

개인 피고인이 민사소송으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연방 소송의 경우를 가정할 때 미국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비록 몇몇 미국 법원이 협행 고문행위에 대하여 사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하였지만 (참조 *Filartiga v. Pene-Irala*, 630 F. 2d 876(2d Cir., 1980)), 상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협약에 의해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상의 기록을 보아도 제 14 조가 주나 어느 개인이 향유하는 민사 재판관할권과 책임으로부터의 면제에 영향을 주려하였다는 표시는 없다.

제 15 조

이 조항은 증거의 예외적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고문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여하한 진술도 고문혐의자에 대하여 고문의 증거로서 원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절차에서도 증거로서 원용되지 않는

다. 예외적 규칙은 제 15 조의 평이한 문구에 의하면 진술 자체에만 적용되며, 소위 진술의 결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이론은 미국 헌법에 있는 형태이며, 국제적 관행상 적용되지 않는다.

고문에 의한 진술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증거 규칙에서는 제외된다. 그러한 진술은 그것이 비자발적인 한 진술한 사람에 대하여 불리하게 원용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와 비자발적 고백의 적용에 대한 미국의 규칙은 협약에 규정된 것보다도 엄격하다. 고문에 의한 진술이 제 3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원용되는 경우, 제 3자가 이를 배척하고자 하는 근거로서 증거획득 수단의 불법성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로서, 제 3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전문 (傳聞)증거를 인정치 않는 규칙에 따라 그러한 진술은 제외하게 될 것이다.

제 16 조

제 16 조는 고문에 미치지 않는 여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이하 CIDT 라 칭함)의 형태를 언급하고 있다.

처음에 협약은 고문과 CIDT에 대하여 거의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다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부당한 처우의 약한 형태에 대하여 고문에 대하여서와 같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CIDT에 대한 의무를 아주 극심하게 정의하는 것이거나, 고문에 대한 의무를 매우 약하게 정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지적하면서 이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견해가 우세하였고 따라서 제 16 조는 분리된, 그리고 고문에는 이르지 않은 CIDT에 대하여 보다 한정적인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제 16 조는 당사국이 그 관할권내의 영토에서 고문에 이르지 않는 CIDT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 16 조는 CIDT

의 금지는 물론 CIDT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CIDT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특별한 조치들은 제 10-13 조에 상술 되었다: 법집행 및 기타 적절한 인사들의 훈련, 심문 및 구금규칙의 검토, 국가기관의 조사, 그리고 조사에 대한 개인의 제소권 인정.

2 항에 규정된 것처럼 제 16 조의 제한된 범위는 여타 적용가능한 국내 혹은 국제법에 의하여 설정된 보다 광범위한 권한과 의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 16 조가 현행 미국법보다 광범위 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군욕적 처우나 형벌”이란 구절은 국제적 문서에 있어 판에 박은 듯 표준적 어투이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협약들의 문맥에서 그 문구를 해석할 때 “잔혹한” 그리고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은 미국 헌법의 제 5 차, 8 차 및 14 차 수정에서 금지한 처우나 형벌과 대체로 상응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군욕적”처우나 형벌은 미국 헌법에서도 아마 금지되지 않은 처우를 잠재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참조시례 유럽 인권위원회, Dec. on Adm., Dec 15, 1977, Case of X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No. 6694/74),

11 Dec. & Rep. 16 (어느 개인의 성 전환에 대하여 당국이 공식적 인지를 거부하는 것은 “군욕적”처우를 구성할 수도 있다). 미국은 그 문구를 잔혹한, 비상례적 그리고 비인도적 처우에 대하여 미국의 헌법상 보장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아래 이해 조항을 추천한다.

“미국은 협약 제 16 조에 사용된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군욕적 처우나 형벌”이라는 어구를 미 헌법의 제 5 차, 8 차 및 14 차 수정에 의하여 금지된 잔혹하고 비상례적이며 비인도적인 처우나 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 16 조는 당사국들이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군욕적 처우나 형벌의 경우에 제 10 조- 13 조에 있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항에서 언급된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제 16 조에 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제 10 조- 13 조와 같이 제 16 조는 연방과 주간에 적절히 혼합된 행위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으며, 위에 제시된 바와같은 연방과 주간의 유보조항이 적절할 것이다.

제 17-24 조 및 28 조

이들 조항들은 협약당사국의 의무와 관련, 감독과 집행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국제적 고문방지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조약 기구의 설립은 표준적 절차이다: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도 비슷한 기구가 설립되었다.(이들 두개의 협약들은 미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나 비준되지는 않았다).

고문방지위원회는 10 명의 “덕망있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정부대표로서가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제 17 조). 이들 전문가들은 당사국들이 지명한 사람들 중에서 당사국들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독립된 전문가라기보다 정부관리가 될 수 있는 소위 “일시적 대리인”的 임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약 당사국들은 연간 약 75 만불로 예상되는 위원회의 경비에 책임을 진다(제 18 조). 미국의 분담금은 유엔예산의 할당을 위해 평가된 액수에 비례하여 계산될 것이다. 이 기준으로 미국의 분담금은 연간 약 18 만 7 천불 정도가 될 것이다.

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들 보고서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 19조). 협약은 위원회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당사국에 한하여만 행사가능한 위원회의 세 가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위원회는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는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제 20조). 그러나 당사국은 서명, 비준, 혹은 승인시에 이러한 권한을 인정치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제 28조).

둘째로, 일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의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동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고발을 심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제 21조).

마지막으로, 협약당사국은 일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들로부터의 또는 개인들을 대신한 통보를 위원회가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제 22조).

이러한 사건들마다 취해져야 할 조치내용이 협약의 각 조항에 상술되어 있다. 당사국들에 의한 고발 및 개인 혹은 개인을 대신한 통보는 모든 가능한 국내조치가 완료되었을 때까지는 받아들여 질 수 없으나, 그러한 조치가 부당하게 연기되거나 혹은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에게 효과적인 구제가 불가능할 때는 예외이다. 고발, 통보 혹은 조사를 당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주장을 설명 및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통보 및 고발은 비공개 회의에서 심리된다.

위원회가 당사국의 고발이나 개인의 통보를 심리하였을 때에는, 그 견해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당사국에 제출한다. 위원회가 조직적인 고문실태를 주장하는 상황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논평이나 제의”를 첨부하여 그 발견물들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재판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조사기구로서 기능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상을 주거나 명령을 할 권

한은 없다. 그러나, 일 당사국이 제 21조에 따라 타 당사국을 고발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우호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는 특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여타 조정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와 같은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제 23조). 미국은 동 협약의 당사국이다.

우리는 제 20조에 따라 미국을 비밀리 조사할 수 있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위원회의 임무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미국은 아래와 같이 유보할 것을 제안한다.

“제 28조 1항에 따라 미국은 제 20조에 의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위원회의 활동이 만족할 만하며 이들 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에 위원회의 권한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미국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비준서의 기탁시 협약 제 21, 22조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는 바, 동 조항들은 미국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나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 심리할 수 있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제 20조에 있는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우리는 충분히 경험있는 위원들로 조직된 기구가 개발되고, 우리가 그 업무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제 21, 22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에 관련된 미국의 마지막 결정을 유보해야만 한다.

제 25-33 조

협약의 마지막 조항들은 비교적 표준적이다.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

과 비준, 혹은 승인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제 25조 및 26조). 협약은 제 27조에 따라 20개 국가가 당사국이 된 30일 후인 1987년 6월 26일에 발효하였다. 어떠한 국가도 1년전의 사전 통고로서 협약에서 탈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퇴는 탈퇴의 효력 발생이전의 작위나 부작 위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 31조).

협약은 개정을 위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당사국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 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 당사국의 2/3 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발효하지 않으며, 이를 특별히 수락한 당사국만 구속한다(제 29조).

협약은 제 30조 1항에서 본 협약의 해석 혹은 적용과 관련한 2개, 혹은 그 이상의 당사국들간의 논쟁은 특별 중재재판에, 또는 이러한 중재재판의 구성에 실패한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제 30조 2항은 어느 당사국이, 이러한 분쟁 해결의무를 배제할 것을 서명, 비준 혹은 승인시에 선언할 수 있다. 1985년 10월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칙 제 36조에 따른 강제적 재판관할권 인정선언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한 결정과 함께 아래 유보를 추천한다:

“협약 제 30조 2항에 따라 미국은 제 30조 1항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음을 선언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동 조항이나, 중재를 위한 여타의 절차에 특별히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이러한 유보로서 미국은 특정한 경우 재판에 의한 판결이 바람직하다면 그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협약의 수탁자이다(제 26조 및 32조). 국제연합의 모든 공식언어로 된 각각의 원본들은 동등히 인증된다.

[부 록]

A.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

총회는,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제 원칙에 따라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제 권리의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제 권리의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고려하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 55 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또한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 5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7 조에 유의하며, 본 결의에 부속된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모든 국가 및 효과적인 역량을 행사하는 기타 조직체를 위한 지침으로서 채택한다.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52 (XXX) of 9 December 1975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Consider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Considering also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in particular Article 55,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Having regard to article 5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oth of which provide that no one may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s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text of which is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as a guideline for all States and other entities exercising effective power.

* 1975.12.9 유엔총회에서 결의 3452(XXX)로 채택되었으며, 이 선언은 모두 12개조로, 고문방지협약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부 속 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

제 1 조

1. 본 선언의 목적상 “고문”이란 개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성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이 행하였거나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 3 자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교사에 의하여 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본규칙과 부합되는 범위의 합법적인 제재 조치로부터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고문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악화되고 의도적인 형태이다.

제 2 조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은 어떠한 것 이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을 무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선포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규탄되어야 한다.

ANNEX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Declaration,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him or other persons.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 Torture constitutes an aggravated and deliberate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2

Any act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s an offence to human dignity and shall be condemned as a denial of the purpos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s a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3 조

어떤 국가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허용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된다.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 또는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 4 조

각 당사국은 본 선언의 규정에 상응하여, 그 관할권내에서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법집행인사 및 기타 공무원들은 훈련에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는 충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상기 금지 내용은, 또한 적절하다면 자유를 속박당하는 개인의 구금 또는 처우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말하여진 일반적인 규칙 또는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토내에서 자유를 속박당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

Article 3

No State may permit or tolerate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may not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4

Each State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eclaration,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rom being practised within its jurisdiction.

Article 5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of other public officials who may be responsible for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ensure that full account is taken of th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is prohibition shall also, where appropriate, be included in such general rules or instructions as are issued in regard to the duties and functions of anyone who may be involved in the custody or treatment of such persons.

Article 6

Each State shall keep under systematic review interrogation methods and practices as well as arrangements for the custody and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in its territory, with a view to preventing any cases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토한다.

제 7 조

각 당사국은 제 1 조에서 정의된 바의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 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에의 가담, 공모, 사주 또는 고문의 미수를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제 8 조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교사에 의하여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누구라도, 관련 당사국의 소관기관에 그 사실을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한 공평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제 1 조에서 정의된 고문행위가 행하여졌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관련 당사국의 소관기관은 공식적 고소가 없었을 지라도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만약 제 8 조 또는 제 9 조하의 조사결과, 제 1 조에서 정의된 바의 고문행위가 범하여진 것이 확실하다면, 국내법에 따라 고문혐의자 또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만약 고문이의 기타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간주되면, 고문혐의자 또는 행위자는 형사상, 징계상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의 대상

Article 7

Each State shall ensure that all acts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are 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The same shall apply in regard to acts which constitute participation in, complicity in, incitement to or an attempt to commit torture.

Article 8

Any person who alleges that he has been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by or at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shall have the right to complain to, and to have his case impartially exa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concerned.

Article 9

Wherever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an act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has been committe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concerned shall promptly proceed to an impartial investigation even if there has been no formal complaint.

Article 10

If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8 or article 9 establishes that an act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appears to have been committed, criminal proceedings shall be instituted against the alleged offender or offender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If an allegation of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s considered to be well founded, the alleged offender or offenders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disciplinary or other appropriate proceedings.

이 되어야 한다.

제 11 조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행위가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교사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으로 증명되면, 고문 피해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구제 및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고문 또는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의 결과로서 이루어 진 것이 명백한 일체의 진술은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 증거로서 원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1

Where it is proved that an act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as been commit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the victim shall be afforded redress and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rticle 12

Any statement which is established to have been made as a result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ay not be invoked as evidence against the person concerned or against any other person in any proceedings.

B.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본 협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제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제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 55 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 5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7 조에 유의하여,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도 유의하고,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금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 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984.12.10 유엔총회에서 결의 39/46으로 채택되었으며, 1987.6.26 자로 발효되었다.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9/46 of 10 December 1984

Entry into force: 26 June 1987,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o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in particular Article 55,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Having regard to article 5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oth of which provide that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aving regard also to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9 December 1975,

Desiring to make more effective the struggle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roughout the world,

Have agreed as follows:

제 1 부

제 1 조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는 용어는 개인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 또는 제 3자가 행하였거나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 3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하에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합법적인 제재조치로부터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본 조항은 적용범위가 더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수 있는 여하한 국제문서 또는 국내입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2 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3. 상급관리 또는 공적인 기관으로부터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PART I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a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or a third person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or coercing him or a third person, or for any reason based on discrimination of any kind, when such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2.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or national legislation which does or may contain provisions of wider application.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effecti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other measures to prevent acts of torture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2.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 whether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may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3. An order from a superior officer or a public authority may not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제 3 조

1. 어느 당사국도 개인을 그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근거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은 적절하다면 관련 국가에서의 심한, 극악한 또는 대량의 인권위반의 고질적인 존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의 미수 및 고문에의 공모 또는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들이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되도록 한다.

제 5 조

1. 각 당사국은 아래의 경우에 제 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a) 범죄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
 - (b)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인 경우
 - (c) 피해자가 자국민이며 자국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
2.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 있거나 본 조 1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에도 동인을 제 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않 을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찬가지

Article 3

1. No State Party shall expel, return ("refoul")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2.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such ground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existence in the State concerned of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flagrant or ma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ticle 4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ll acts of torture are 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The same shall apply to an attempt to commit torture and to an act by any person which constitutes complicity or participation in torture.
2. 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se offences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Article 5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in the following cases:
 - (a) When the offences are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r on board a ship or aircraft registered in that State;
 - (b)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a national of that State;
 - (c)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at State if that State considers it appropriate.
2. Each State Party shall likewise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such offences in cases where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and it does not extradite him pursuant to article 8 to any of the States

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된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 6 조

1. 자국 영토내에 제 4 조에서 언급된 범죄 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후 상황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납득되면 즉시 그를 구금하거나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법적조치를 취한다. 구금이나 다른 법적 조치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취하여지며 형사 또는 인도 절차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만 계속될 수 있다.
2. 그러한 국가는 즉시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3. 본 조 1항에 따라 구금중인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인의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와 또는 무국적자일 경우 그가 일상적으로 체재하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인 연락을 취함에 있어 도움을 받는다.
4. 일 국가가 본 조에 따라 개인을 구금하였을 때에는 동인의 구금사실 및 동인의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을 제 5 조 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본 조 2 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실시한 국가는 그 결과를 즉각 상기 국가들에게 통보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도 표명한다.

제 7 조

1.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토내에 제 4 조에 언급된 범죄의 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제 5 조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 동인을 인도하지 않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Convention does not exclude any criminal jurisdiction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law.

Article 6

1. Upon being satisfied, after an examination of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at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any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a person alleged to have committed any offence referred to in article 4 is present shall take him into custody or take other legal measures to ensure his presence. The custody and other legal measures shall be as provided in the law of that State but may be continued only for such time as is necessary to enable any criminal or extradition proceedings to be instituted.

2. Such State shall immediately make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facts.

3. Any person in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assisted in communicating immediately with the nearest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or, if he is a stateless person,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ere he usually resides.

4. When a State, pursuant to this article, has taken a person into custody,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fact that such person is in custody and of the circumstances which warrant his detention. The State which makes the preliminary inquiry contemplat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promptly report its findings to the said States and shall indicate whether it intends to exercise jurisdiction.

Article 7

1. The State Party in the territory under whose jurisdiction a person alleged to have committed any offence referred to in article 4 is found shall in the cases contemplated in article 5, if it does not extradite him,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

는다면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소관기관에 회부한다.

2. 이 기관은 자국법하에서 중대한 성격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5조 2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기소 또는 선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의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제5조 1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3. 제4조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치우를 보장받는다.

제 8 조

1. 제4조에 언급된 범죄는 당사국들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 인도 조약상에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시키도록 조치한다.
2.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일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을 경우, 동 협약을 그러한 범죄들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여타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가들이 아닌 당사국들 간에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인정한다.
4. 그러한 범죄들은 당사국들간의 인도목적을 위하여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물론 제5조 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영토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pose of prosecution.

2. These authorities shall take their decis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se of any ordinary offence of a serious natur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2, the standards of evidence required for prosecution and conviction shall in no way be less stringent than those which apply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1.

3. Any person regarding whom proceedings are brought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shall be guaranteed fair treatment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Article 8

1.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extraditable offences in any extradition treaty existing between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undertake to includ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in every extradition treaty to be concluded between them.

2. If a State Party which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it may consider this Convention as the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such offences. Extrad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other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3. States Parties which do no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recogniz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between themselves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4. Such offences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 of extradition between States Parties, as if they had been committed not only in the place in which they occurred but also in the territories of the States required to establish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1.

제 9 조

1. 당사국들은 제 4 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관한 형사상 절차와 관련, 동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재량하에 있는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상호간에 제공한다.
2.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법공조에 관한 모든 조약에 따라서 본 조 1 항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될 수 있는 법집행 인사, 민간 또는 군 및 의학계 인사, 공무원 및 기타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인사들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발하여진 규정 또는 지침에 고문의 금지를 포함시킨다.

제 11 조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심문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 12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소관기관이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보장한다.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criminal proceedings brought in respect of any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including the supply of all evidence at their disposal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2. States Parties shall carry out their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conformity with any treaties on mutual judicial assistance that may exist between them.

Article 10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educa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are fully included in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civil or military, medical personnel, public officials and other persons who may be involved in the custody, interrogation or treatment of any individual subjected to any form of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2.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this prohibition in the rules or instructions issued in regard to the duties and functions of any such person.

Article 11

Each State Party shall keep under systematic review interrogation rules, instructions, methods and practices as well as arrangements for the custody and treatment of persons subjected to any form of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with a view to preventing any cases of torture.

Article 12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proceed to a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wherever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an act of torture has been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제 13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 소관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등 사건에 대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고소자 및 증인들이 고소 또는 증거제시의 결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처우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 14 조

1.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법 하에서 인정되는 피해자 또는 여타 사람들의 보상요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각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여하한 진술도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 졌다는 증거로서 원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원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제 16 조

1. 각 당사국은 제 1 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않는 여타 잔혹한, 비인

Article 13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ny individual who alleges he has been subjected to torture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has the right to complain to, and to have his case promptly and impartially examined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Step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 complainant and witnesses are protected against all ill-treatment or intimidation as a consequence of his complaint or any evidence given.

Article 14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in its legal system that the victim of an act of torture obtains redress and has an enforceable right to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including the means for as full rehabilitation as possible.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the victim as a result of an act of torture, his dependants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any right of the victim or other persons to compensation which may exist under national law.

Article 15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ment which is established to have been made as a result of torture shall not be invoked as evidence in any proceedings, except against a person accused of torture as evidence that the statement was made.

Article 16

1. Each State Party shall undertake to prev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ther act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

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교사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하여 질 때에는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포함된 의무는 고문에 관하여서 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2. 본 협약의 규정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문서 또는 국내 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2 부

제 17 조

1. 고문방지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칭함)가 설립되어 아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전문가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 소유 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인권이사회의 위원이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인사들의 지명 유용성에 유의한다.
3. 위원회의 위원선출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개최되는 격년주기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

ment or punishment which do not amount to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when such acts are commit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n particular,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s 10, 11, 12 and 13 shall apply with the substitution for references to torture of references to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ny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or national law which prohibits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which relates to extradition or expulsion.

PART II

Article 17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against Tor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ho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 experts shall be elected by the States Partie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o the usefulness of the participation of some persons having legal experience.
2.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States Parties shall bear in mind the usefulness of nominating persons who are also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who are willing to serve on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3.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